서울동부지방법원 2024. 5. 30 선고 2024가단105530 판결 [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등]

전 문

원 고 A은행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5. 2.

판 결 선 고 2024. 5. 3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40,000,000원의 범위 내에서,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191,152,657원과 이 중 181,600,000원에 대하여 2023. 11. 3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별지 청구원인 기재사실(단 채권자는 원고, 채무자는 피고를 말하고, 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은 2024. 1. 17. 확정되었다, 이 법원 2023차전 2114 지급명령 참조)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판사 이진화

청 구 원 인

1. 당사자 관계

채권자는 금융업법에 의거 여. 수신의 금융거래를 주업무로 하는 자이고,
채무자 주식회사 C 를 차주로, 채무자 B 를 연대보증인으로 채권자의 영업점를 방문하여 여신거래약정서 및 근보증서를 작성하고 이하의 대출실행과정을 완료한 자들입니다.

2.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금전거래약정

가. 채무자들과 2016. 05. 25. 여신거래약정서실 및 근보증서

1) 채권자는 채무자 주식회사 C (이하 "회사" 라한다)와 기업용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이자율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기로 약정을 맺고,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로 금 200,000,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며, 이 약정의 만료일을 2023. 08. 25.로 정하여 금전거래를 하였으며,

그 당시 채무자 B 는 근보증서를 작성하고 근보증한도액 금240,000,000원으로 정하고 연대보증인에 서명날인 한 바 있습니다.

2) 채무자들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대출만기일이 지나 채권자는 채권자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하고,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2023. 11. 29.자 현재 위 잔여대여금 181,600,000원 및 정상이자 금2,388,164원 및 연체이자 금 7,164,493원등 합계금191,152,657원을 반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

3.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청구

채무자들은 위 2.의 각 금전거래약정의 이행 지체로 인하여 채권자는 채권자 은행의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의하여 채무자들에게 기한의 이익를 상실케하고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의 채무의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각 대출잔여금 및 지연이자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

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청구취지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른것입니다

끝.